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

## I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1. 개정 이유

- 스타트업이 특허권 조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70%감면(20만원→6만원) 도입
  - \*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19.3)」 추진 과제 반영
- 스타트업이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기반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

### 2. 개정 내용

- **(감면 대상)** 스타트업\*이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70%감면
  - \* 창업 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2)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 우선심사 대상 요건 중 하나인 자기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을 한 창업 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4제2호자목)
- **(감면 건수 제한)** 스타트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면서,
  - 우선심사 신청의 증가에 따른 일반심사의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신청인별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건수 상한(10건\*)을 설정
  - 감면건수 산정시 제외되는 경우로서 현행 우선심사신청이 반려된 경우 외에 무효처분된 것도 감면건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개정

- **(한시적 감면기간 설정)** 감면 효과, 심사처리기간, 출원 동향 등을 분석하여 감면 유지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한시적 기간(5년)**을 설정
  - \* 제도 운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또한 매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개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제7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 (현행과 같음)
1.~9. (생 략)	1.~9. (생 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가</u>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 ( <u>반려</u> 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 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10. ----- <u>자가</u> <u>2024년 12월 31일까지</u> ----- ----- ----- ----- ----- <u>(무효·반려</u> ----- -----.
가.~라. (생 략)	가.~라. (생 략)
<u>&lt;신 설&gt;</u>	11. <u>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의 창업을 말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감면 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 심사신청은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u>

현 행	개 정 안
	<u>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u> 이하로 한다.
③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3. 개정 효과

- 스타트업이 IP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기반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

### 4.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징수규칙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우선심사신청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이하 여백 -

## II

#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특허 유지비용 감면

## 1. 개정 이유

- 개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은행)의 IP금융 실행에 따른 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경감

\*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18.12.)」 추진 과제 반영

## 2. 개정 내용

- **(감면 대상)** IP금융 체계에서 채권자 및 신탁업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대상으로 감면

\* 은행업(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은행법§2)

- 은행이 IP금융을 시행한 후 질권의 실행 등\*으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감면

\* 질권 실행, S&LB(Sales & Licence Back)에 의한 수탁, 신탁업에 의한 수탁

- **(감면 비율)** 연차등록료 감면 대상인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감면비율(50%)과 동일하게 적용

\* 중소기업의 특허를 이전 받아 특허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연차등록료 감면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활용 지원 등 정책 기초를 유지

- **(한시적 감면기간 설정)**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청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은행에 대해 연차등록료 감면을 실시하되,

- 연차등록료 감면 정책과 IP금융 활성화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감면 유지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한시적 기간(5년)을 설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제7조제2항제9의4호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9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9 (생 략)
<u>&lt;신 설&gt;</u>	<p><u>9의4. 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다만, 은행이 다음 각 목의 방식에 따라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 받은 경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만 해당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u></p> <p><u>가. 은행이 질권자로서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등록한 후 은행의 질권실행으로 인하여 질권의 목적이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은행으로 이전된 경우</u></p> <p><u>나.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말한다.)이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는 은행으로 하여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u></p>

연 행	개 정 안
10. (이후 생략)	다. <u>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신탁을 인수하는 자는 은행으로 하여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u>

### 3. 개정 효과

- 개인, 중소·벤처기업 등의 IP를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는 IP금융 활성화
- 우수 IP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활동이 증가하여 IP기반 혁신성장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4.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징수규칙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
  - 징수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
  - \* 연차등록료 50% 감면대상자로부터 이전 받은 특허권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감면 비율은 변경은 없음(다만, 보전·추가납부·회복 납부는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

※ (은행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9의4호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규칙 시행 전에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제8조제8항 단서, 제8조제9항 또는 제8조제10항에 따라 납부하는 것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 이하 여백 -

### Ⅲ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선납시 차감 비율 상향(5%→10%)

#### 1. 개정 이유

- 특허권 등의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등록료를 선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중
  -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자는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를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함(특§79①후단, 실§16①후단, 디§79①후단)
  - \*\*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3년분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 총액의 5% 차감 제도 시행('11.11.1.시행)
-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의 선납을 통해 특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차감 비율을 상향

#### 2. 개정 내용

-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시 납부총액의 차감비율을 상향(5%→10%)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제8조제11항 >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부방법 등) ①~⑩(생략)	제8조(납부방법 등) ①~⑩(생략)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⑪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p>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u>100분의 5</u>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  <u>100분의 10</u>-----  -----  -----  -----  -----</p>
⑫~⑰ (생 략)	⑫~⑰ (생 략)

### 3. 개정 효과

- 연차등록료의 선납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여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권리소멸 방지
- 안정적 권리유지 및 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특허 관리의 효율성 제고

### 4.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징수규칙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정상납부기간 중에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
  - \* 선납시 차감 규정은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정상납부기간)」에만 적용(§8⑪본문)되므로,
    - 시행일 전에 등록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보전기간, 추가납부기간 및 회복납부기간 중에 있는 건은 적용하지 않음

※ (3년분 이상의 특허료 등을 일괄납부하는 경우의 차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되어 이 규칙 시행 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규칙 시행 전에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제8조제8항 단서, 제8조제9항 또는 제8조제10항에 따라 납부하는 것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 1. 개정 이유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확대 적용을 통해 금융계좌 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
  - \*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계좌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승인\*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추가 및 이용안내('18.4.),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및 민원사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 안내('18.11)(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

## 2. 개정 내용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 사항 변경 등 서식 개정
- 서식 '기재요령'의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 수수료 등의 사후감면 신청이 대상이 되는 특허(등록)료를 명확히 하고 금융 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추가

## 3. 개정 효과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입금계좌 확인정보(계좌의 유효성 정보)를 확인하여 출원인 등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

## 4. 시행 시기

- 징수규칙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부칙 개정(안) 일부 〉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9의4호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규칙 시행 전에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제8조제8항 단서, 제8조제9항 또는 제8조제10항에 따라 납부하는 것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신청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3년분 이상의 특허료 등을 일괄납부하는 경우의 차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되어 이 규칙 시행 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규칙 시행 전에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제8조제8항 단서, 제8조제9항 또는 제8조제10항에 따라 납부하는 것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붙임1] 별지 제3호서식(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개정안

[붙임2] 별지 제3호서식(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개정안 적용 후 서식

# [붙임1]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0. 4.>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앞쪽)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감면신청사항]

[감면(면제)사유]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환신청 계좌로 처음 반환 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 (기재요령 제7호 및 제8호 참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반환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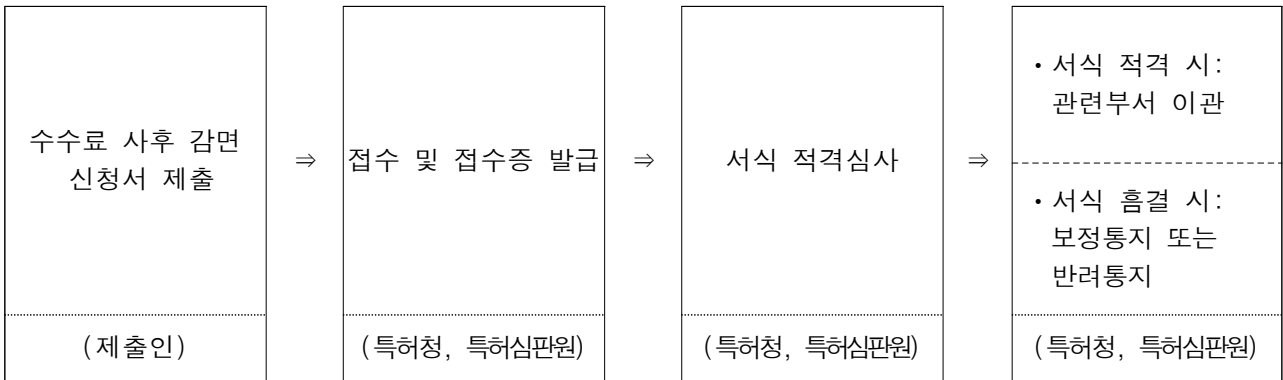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 전담조직만 해당합니다) 등을 감면받지 못한 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이 서식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출원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출원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하였을 때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출원료 등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등과** 관련된 수수료의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심판청구료(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의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인]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심사)청구인" 등과 같이 신청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재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

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첨부서류로 여러 건의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절차인 출원(출원료, 심사청구료, 출원인변경신고료), 등록(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이전등록료), 심판(심판청구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후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출원·등록·심판 각각의 절차마다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출원에 관한 신청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9-1234567
등록에 관한 신청	[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3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9-당-123456

### 5. [감면신청사항]란

[감면(면제)사유]란에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공동출원인이 평균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6. [반환신청사항]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감면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반환신청인을 적습니다. 반드시 "사후 감면신청서" 상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제3자가 반환 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반환신청인이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위 성명의 실명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 [은행 및 계좌번호]란은 위 신청인(대리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주의: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은행 및 계좌번호]00은행 676-01-123456

~~라. 신탁, 단위농협, 상호저축은행, 외국계 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외국계 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 상호저축은행(일부)의 계좌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3) 반환신청 계좌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필요한 경우)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호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확인사항] 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신고인(대리인)과 반환 받을 계좌의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나. 반환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개인인 경우로서 계좌의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반환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 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붙임2] [별지제3호 서식 개정안 적용 후 서식]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 .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앞쪽)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감면신청사항]

[감면(면제)사유]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 (기재요령 제7호 및 제8호 참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반환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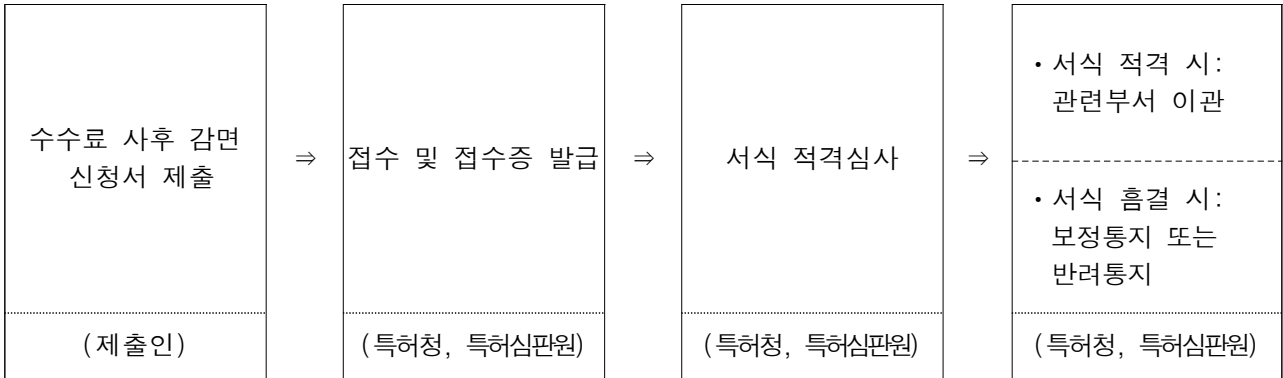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출원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출원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하였을 때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출원료 등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등과 관련된 수수료의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심판청구료(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의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인]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심사)청구인" 등과 같이 신청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첨부서류로 여러 건의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절차인 출원(출원료, 심사청구료, 출원인변경신고료), 등록(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이전등록료), 심판(심판청구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후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출원·등록·심판 각각의 절차마다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출원에 관한 신청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9-1234567
등록에 관한 신청	[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3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9-당-123456

#### 5. [감면신청사항]란

[감면(면제)사유]란에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공동출원인이 평균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6. [반환신청사항]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감면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반환신청인을 적습니다. 반드시 "사후 감면신청서" 상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제3자가 반환 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반환신청인이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위 성명의 실명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 [은행 및 계좌번호]란은 위 신청인(대리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주의: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은행 및 계좌번호]00은행 676-01-123456

라. 외국계 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 상호저축은행(일부)의 계좌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3) 반환신청 계좌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필요한 경우)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확인사항] 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신고인(대리인)과 반환 받을 계좌의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나. 반환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개인인 경우로서 계좌의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반환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 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